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

1. 경 과

의안 제640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,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공간을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절차와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,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0조~제25조) 및 관련 별표·서식 정비(별표1~5, 서식1~5호)
- 나.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및 책무성 제고(안 제7조, 제9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, 위원회 검토: 해당 없음
라. 입법예고(2025. 10. 2. ~ 10. 2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,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,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안 정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,

○ 종합의견

- YDP미래평생학습관(도신로4길 20)은 우리 구(區)의 평생학습 거점으로써 개인의 일상 학습을 지원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써,
- 공공기관 및 평생학습동아리에 한정된 대관 대상을 교육청, 학교,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 기관은 물론 지역 모임 및 구민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유휴 공간에 대해서 공익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

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계획(YDP미래평생학습관 대관 운영계획, 미래교육과-4937(2025.4.11.))을 수립한 바 있음.

【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개요】

- 소재지: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
- 규모: 지하1층~지상5층/ 연면적 $4,738 m^2$
- 이용대상: 영등포구민 누구나
- 대관시설: 총 10개(대강당1, 강의실9)
- 기자재: 빔프로젝트(스크린), 스마트 TV, 유·무선마이크, 음향장비, 노트북 등

- 이를 위하여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 시설 훼손 및 질서 유지, 안전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,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설 사용 기준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¹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,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 제4항²⁾에서도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 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은 상위법에 근거 있어 적법한 입법 행위임.

1) 제161조(공공시설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2) 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아울러 안 제20조의 이용 제한 사유³⁾, 안 제22조의 시설 사용의 제한 사유⁴⁾, 안 제23조의 시설 사용의 취소 사유⁵⁾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공시설의 위험 방지, 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⁶⁾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 담당 국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을

3) 제20조(평생학습관 이용 제한)

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

1.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
2.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
3. 시설 내에서 음주, 소란,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
4.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,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4) 제22조(시설 사용의 제한)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, 강연, 모임 등을 위한 경우
2.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
3.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
4.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5) 제23조(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)

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2.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,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
6) 출처: 법제처 2015.6.16. 의견제시 15-0155

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(국립국어원, 표준국어대사전)로서 그 이용권의 범위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,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지며,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공공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

당연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는 구청·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겨지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61조(공공시설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2 평생교육법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

- ①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1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- 2. 평생교육 상담
 - 3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- 4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
 - 5. 제21조의3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 - 6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